

[배터리화재쟁점] 배터리 발화사고와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+ 기본법  
리 및 실무적 내용



## 1. 기본적 법리

### 가. 제품의 결함

제조물책임은 제조물(제품)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. **제조물의 결함 여부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 요건입니다.**

**제조상의 결함**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. 즉,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 **설계상의 결함**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

다. **표시상의 결함**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.

## 나. 제조업자

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·원재료의 제조업자, **표시 제조업자**, 수입업자,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.

## 2. 책임요건 - 판례상 법리 실시부분

“물품을 제조·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,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,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,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,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,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,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·

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,

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,

**소비자 측에서** (1)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, (2)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,

**제조업자 측에서** (3)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,

위와 같은 **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,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**

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·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15934 판결 참조).“

### 3.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시부분

“**소비자 측에서** (1) 해당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, (2) 그 화재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, (3)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다른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,

**제조업체가** (4)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,

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.”

유해물질, 인과관계조사, 손해배상, 특별손해, 제조물책임, 관리책임, 민형사소송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